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 2015. 1. 26.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
---	--

담당부서	분쟁조정국	정준택 국장(3145-5210), 장상훈 팀장(3145-5243)		
배 포 일	2015. 1. 23.(금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9~92)	총 6매

제 목 : 자동차 혼유사고 (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사고 등)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

I. 개 요

-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(디젤)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*
 - * 최근 3년간 우리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임
 -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짐
-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,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
 - 다만,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유사고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
- 금융감독원(금융소비자보호처)은 『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』을 안내하여
 - 혼유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s.or.kr>

Ⅱ.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 유의사항

- ①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, 시동불능·꺼짐 등 현상이 발생함
 -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지 않고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
 - ②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혼유사고 발생시 통상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나, 차량운행을 계속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이 확대되어 차량 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*
- * 혼유사고 후 차량운행시 ①연료탱크 및 부속장치, 연료필터 손상, ②인젝터, 연료펌프 손상, ③엔진 손상까지 될 수 있음
- ③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

Ⅲ.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

- ①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 - 혼유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*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*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“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가한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”을 말함
-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

② 혼유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되어야 함

- 주유영수증(신용카드·체크카드 등), 증거사진,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함*

*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,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

③ 혼유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

-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,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하여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*

①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,
②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행을 계속한 경우 등

IV. 혼유사고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

① 셀프(Self) 주유

-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(Self)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

② 혼유사고 발생여부

- 혼유사고 발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, 차량점검 결과, 주유소 CCTV 화면 등을 통해 혼유사고 여부가 결정됨

③ 운전자의 과실여부

-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의 경우 피해가 모두 보상되나,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됨

④ 보상범위(차량 수리범위)

- 혼유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짐

V. 결 론

- ☐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,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☐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,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함
- ☐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,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

혼유사고 관련 분쟁유형

유형 1 셀프[self] 주유의 경우

- (민원인 주장) 셀프(Self) 주유시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에도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동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함
- (보험사 주장)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셀프(Self) 주유중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,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님

➡ 셀프(Self) 주유의 경우,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 하에 주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,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

유형 2 혼유사고 여부에 대한 분쟁

- (민원인 주장) A주유소에서 직원에게 경유 5만원을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였고, 주유 후 10km 주행 후 엔진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였는데, 동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가 엔진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주어야 함
- (보험사 주장) 주유영수증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주유소가 노후하여 주유기에서는 주유만 이루어지고 직원이 따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며,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므로 혼유사고에 해당하지 않음

➡ 주유소 CCTV 확인결과, 주유소의 주유충은 녹색(경유)과 빨간색(휘발유)으로 구분되는데, 직접 주유한 직원이 사용한 주유충은 녹색으로 확인되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
유형 3

과실비율에 대한 분쟁

- (민원인 주장) B주유소 종업원에게 경유 3만원을 주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 종업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된 것이므로 보험사가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모두 보상해주어야 함
- (보험사 주장) B주유소 직원이 “민원인이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”고 진술하고 있으며, 혼유사고 발생 이후 차량운행을 계속하는 등 민원인에게도 일부 과실(20%)이 있으므로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줄 수는 없음

➡ 민원인이 주유를 요청하면서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고*, 설령 민원인이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에게 기름의 종류를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점, 민원인이 혼유사고를 인식한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

* B주유소는 하나의 주유기(Pump)에 설치된 2개의 주유총으로 경유와 휘발유를 함께 주유하고 있음

유형 4

차량 수리범위에 대한 분쟁

- (민원인 주장)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, 보험사가 연료탱크 세척, 연료필터 교환만 해주고 인젝터, 연료펌프를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
- (보험사 주장)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, 정비업체의 점검결과 연료탱크 세척과 연료필터 교환만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젝터, 연료펌프까지 교환해줄 수는 없음

➡ 민원인이 직접 의뢰한 정비업체의 점검결과, 연료탱크 세척·연료필터 교환 후 출력 등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, 보험사가 향후 혼유사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수리완료일로부터 1년/2만km까지 수리를 보증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